

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업체의 공동도급·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인력·자재·장비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나.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의2)

다. 지역건설산업체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용어 및 문구 정비(안 제2조, 제4조, 제13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건설산업기본법」

2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
3)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자재 제조·유통업, 건설용역업”을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내에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,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, 건설자재 제조·유통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인등기부등본”을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”로 한다.

제3조제5항 중 “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, 하도급 비율은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,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”를 “공동도급과 하도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·사용토록”을 “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,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

계약집행기준」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비율 : 49퍼센트 이상

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: 70퍼센트 이상

3. 민간 개발사업에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확대

② 시장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품질 및 적정 공정 확보에 지장이 없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.

1.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주민의 비율 : 60퍼센트 이상

2. 사용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 또는 납품하는 제품 비율 : 70퍼센트 이상

3. 사용하는 장비 중 지역의 장비 비율 : 70퍼센트 이상

4. 해당 건설사업과 연계된 분양 또는 광고의 대행, 법률·회계의 자문 등을 비롯한 연관분야의 지역업체 계약 비율 : 70퍼센트 이상

제4조의 제목 중 “지역건설산업체”를 “지역업체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

분) 중 “경쟁을 통하여,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”을 “지역건설문화 조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역업체는 양질의 설계·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주민의 고용과 시 관 내에서 생산되는 건설·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 중 “시의회”를 “구미시의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제2조(정의)	-----	
1. “지역건설산업“이란 「건설 산업기본법」 또는 다른 법령 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구미 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자재 제조·유통업, 건설용역업을 말한다.		1.	-----	구미시(이 하 “시“라 한다) 내에서 「건 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 른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, 다 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 업, 건설자재 제조·유통업-- -----.
2. “지역건설산업체”(이하 “지 역업체”라 한다)란 법인인 경 우에는 <u>법인등기부등본</u> , 개인 인 경우에는 <u>사업자등록증</u> 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 체를 말한다.		2.	-----	----- ----- ----- <u>법인등기사항증명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④ (생 략)	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		
⑤ 시장은 다른 지역업체가 지 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, 지역업체와의 <u>공동계약 비율을</u> <u>49퍼센트까지</u> , 하도급 비율은 <u>70</u> <u>퍼센트 이상</u> <u>높이도록 권장할</u> <u>수</u> 있고,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		⑤	-----	----- ----- ----- <u>공동도급과 하도</u> <u>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</u> <u>한다.</u>

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·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, 이 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지역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지원 및 각종 편의와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⑥ -----

-----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-----

-----.

제3조의2(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

장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비율 : 49퍼센트 이상
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

급하는 경우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: 70퍼센트 이상

3. 민간 개발사업에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확대

② 시장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품질 및 적정 공정 확보에 지장이 없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.

1.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주민의 비율 : 60퍼센트 이상

2. 사용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 또는 납품하는 제품 비율 : 70퍼센트 이상

3. 사용하는 장비 중 지역의 장비 비율 : 70퍼센트 이상

4. 해당 건설사업과 연계된 분양 또는 광고의 대행, 법률·회계의 자문 등을 비롯한 연관분야의 지역업체 계약 비율 : 70퍼센트 이상

제3조의2 (생략)

제3조의3 (현행 제3조의2와 같음)

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) 지
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
여,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
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
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
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3조(구성) ① (생 략)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
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
원들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하며,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
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

2. ~ 5. (생 략)

③ · ④ (생 략)

제4조(지역업체 등-----) ① --
----- 지역건설문화
조성-----

-----.

② 지역업체는 양질의 설계·시
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
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
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
한다.

③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
설사업자는 지역주민의 고용과
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·건
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를
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구미시의회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건설산업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건설산업”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.
2. “건설업”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(業)을 말한다.
3. “건설용역업”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, 설계, 감리, 사업관리,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(이하 “건설용역”이라 한다)을 하는 업(業)을 말한다.
4. “건설공사”란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·유지·보수하는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)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 - 가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
 - 나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 - 다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
 - 라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
5. ~ 11. 생략
12. “하도급”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

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

13. ~ 15. 생략

□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
제29조(공동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

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)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·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.

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

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

제1절 총 칙

1. ~ 6. 생 략

7. 계약담당자 주의사항

가. 계약담당자는 공사 · 용역 · 물품 등의 입찰 · 계약 집행과 관련하여
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.

나.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

1)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

가)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 ·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
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(업체)로 제한하는 사례

나)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
사례 (예: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)

다) 입찰공고 · 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
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

2) 특수한 기술 ·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
으로 제한하는 사례

3) ~ 35) 생 략

8. ~ 14. 생 략

소 관 부 서		도시계획과
입 안 자	과 장	곽 경 철
	팀 장	조 근 호
	담 당 자	권 혜 령 (480-5428)